

## ■ 최신 법령 ■

### [보험]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

배성진 변호사 | 이유경 변호사

2012년 8월 발표된 「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이 2012년 11월 28일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(일부 규정 제외)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(금융위원회 2012년 8월 30일 자 보도자료 「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」, 금융위원회 2012년 11월 28일 자 보도자료 「보험업감독규정 개정」 참조).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(이하 '개정규정'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1. 주요내용

##### 가.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

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통합상품의 특약형태로 판매 중이고, 기존 보험업감독규정은 실손의료보험의 형태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. 개정규정은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동 상품만을 가입·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(규정 제4-35조의2 제1항 제8호).

##### 나. 자기부담금 다양화

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%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추가하여 자기부담금 20%인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(규정 제7-49조 제5호 가목, 규정 제7-50조 제2항 제1호 가목). 자기부담금을 이와 달리하는 상품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.

#### 다. 보험료 변경주기 단축

보험료를 매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(규정 제7-49조 제5호 나목). 또한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(참조순보험요율)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(규정 제7-51조 제1항 제5호). 다만, 해당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[규정 부칙 (2012. 11. 28.) 제1조].

#### 라. 보장내용 변경주기(보험기간) 단축

특정연령까지 동일하게 보장하는 현행 방식에서 보장내용 변경주기(보험기간)를 1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가입 조건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(규정 제7-49조 제5호 다목, 제4-35조의2 제1항 제3호).

2. 다운로드 : [금융위원회 2012년 11월 28일 자 보도자료 「보험업감독규정 개정」](#)  
[보험업감독규정\(2012년 11월 28일 개정\)](#)